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6. 6. 2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제정(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의 근거법규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중 제18조(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설치)내지 제21조의 규정이 개정(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 폐지

##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8조내지제21조(삭제)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내지 제11조(삭제)

##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종로구, 중랑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서초구

## □ 검토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1998. 4. 1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법 제18조(편의시설촉진기금의 설치) 규정에 따라 2001.9.27. 조례 제503호로 제정·운영하였으나, 2003년부터 일반회계로 사업이 이관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근거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규정이 2004.1.1부터 개정(삭제)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운용기금(2억1천3백만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 여입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2006. 6. 22

보고자 : 이 남 식